학생 취업 추천 준칙

제정 1994. 08. 08.
제3차 개정 2017. 06. 27.

제1조(목적) 본 준칙은 취창업진로지원위원회 규정 제5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7.06.27)

제2조(적용) 본 준칙은 외부기관 및 기업체에서 학교(미래인재개발센터)에 취업추천을 의뢰하고 추천에 의하여 취업이 결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06.05.22, 2009.02.19, 2017.06.27)

제3조(적용의 제한) ① 공채에 응모하는 취업 희망자는 본 준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② 각 단과대학이나 각 학과에 직접 취업추천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본 준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제4조(피추천자 선정) ① 학교에서 외부기관 및 기업체의 취업추천 의뢰서를 접수하면 피추천자를 선정하여 총장 명의로 추천서를 발급한다.
② 특정학과 또는 전공계열에 한정하여 일정 인원의 추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학과장이 취업희망자 중에서 일정 인원의 피추천자를 선발하여 미래인재개발센터장에게 통보한다. (개정 2006.05.22, 2017.06.27)
③ 특정학과 또는 전공계열을 명시하지 않고 소수인원을 추천 요청하였을 때는 미래인재개발센터장은 각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성적순(전학년 평균평점)에 의하여 선정한다. (개정 2006.05.22, 2017.06.27)
④ 각 학과장은 추천후보자를 선정할 경우에 전공, 부전공, 성적, 학생 활동상황, 상벌관계, 적성 등을 참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 (개정 2017.06.27)

제5조(추천우선순위) 졸업생 및 재학생이 경합된 경우에는 재학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추천일반원칙) ① 취업기회의 균등을 기하기 위하여 1인 1개 기관의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추천후보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학교의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장은 추천을 유보할 수 있다.

제7조(경과조치) 본 준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창업진로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 (개정 2017.06.27)

부칙
이 준칙은 1994년 08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502, 2006.05.22)
이 준칙은 2006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172, 2009.02.18)
이 준칙은 2009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284, 2017.06.29)
이 준칙은 2017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